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안
번호 : 234

제출년월일 : 1994. 4.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국제화 · 개방화시대에 능동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을 위한 민 · 관 · 산 · 학협의체를 속초시 조례로 구성운영(안 제1조)

나.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 세미나 ·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등

다.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안 제10조)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